유해 · 위험방지계획서·공정안전보고서 대상여부 확인 의뢰서

귀사(하)의 건축 인허가 서류를 접수한 **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법규*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 산업안전보건법 대상검토를 요청**(제42조에 따른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, 제44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)함에 따라, 이를 확인하고자 확인 의뢰서를 송부하오니 **건축주와 협의하여 아래 양식을 작성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, 회신의 늦어질 경우 건축허가가 지연될 수 있음**을 알려드립니다.

* 건축법 제11조,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4조의3,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

Ⅰ. 건축주 현황

사업장(예정)명		대표자 또는 건축주		
사업자번호		사업장관리번호		
우편물수신처		담당자 (건축주)	성 명	
건축소재지			전화번호	

Ⅱ. 건축 예정 정보 확인

구 분	작성 내용	작성 방법
업종코드	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종코드 (5자리 숫자)	공장설립(제조시설설치)승인서, 산업단지입주계약서, 공장등록증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종코드 전체 기재
준공(예정)일	준공(예정)일 : 년 월 예정	준공(예정)일 기재(월단위)
전기 계약(예정)용량	전기 계약(예정) 용량 : kW	한전 전기사용계약서, 전기요금고지서의 계약전력 확인
설비 증설 (또는 이설) 예정일	설치 예정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 : kW 증설/이설 예정일 : 년 월 예정	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설치 예정인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 및 설치(예정)일 기재

Ⅲ. 특정 설비 사용(예정) 확인

구 분	확인 방법	설치(예정)여부 (O, X)
① 용해로	1회 최대 용해용량이 3톤 이상	
② 건조설비	연료소비량 50kg/h, 정격 소비전력 50kW/h 이상	
③ 가스집합용접장치	인화성가스 집합량 1,000kg 이상	
④ 화학설비	특수화학설비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 및 별표9 기준량이상 해당	
⑤ 국소배기장치	안전검사 대상 49종 유해물질 관련 배풍량 60㎥/min 이상	
⑤ 전체환기장치/밀폐설비	그 외 허가·관리대상물질, 분진작업 관련 배풍량 150㎥/min 이상인 경우	

특정설비(④,⑤) 및 공정안전보고서 대상판단을 위한 자료

※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 불가능한 내용은 반드시 건축주 확인 필요
※ 흄후드, 스크러버, 백필터(집진기), 도장부스 등은 국소배기장치/전체환기장치/밀폐설비에 해당

Ⅳ.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확인(업종대상에 한함)

대상	비대상

Ⅴ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

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	제조업 등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대상검토, 제출안내 등 행정업무 시 담당자 정보로 활용		
개인정보 수집항목	건축주(담당자) 성명, 전화번호, 우편물 수신처	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	3년
귀하는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다만,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확인자와 유선을 통한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확인 및 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.			
개인정보 수집 동의여부(O/X)			

20 년 월 일

건축사무소장 성명 : (인) 건축주 성명 : (인)